

공판 전 정리 절차에 대해서

慶應義塾大學 명예교수

大東文化大學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平良木 登規男(히라라기 토키오) 발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부연구위원 번역

1. 들어가며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지만, 본인이 사법제도개혁 추진본부의 위원으로 입법에 관여하였고, 또한, 본인의 교과서에서도 비교적 비중을 두고 집필한 곳 중의 하나인 "공판전정리절차"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004년 5월에 성립하여 2005년 11월에 시행된 이 절차는 자기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제1심 공판절차를 충실히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이지만, 모든 재판원재판에 적용하는 것이기도 해서, 재판원재판을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당초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받아들여져 정착하였고, 현재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이 절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제의 발단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문제의 출발점(기본구조의 변혁)

일본은 메이지(明治) 유신을 거쳐 새로운 법제도를 제정하고자 하였을 때, 모델로 한 것이 형사재판절차에서는 프랑스법의 치죄법(Code d' instruction criminelle)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독일의 집권적 통치형태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의 프로이센의 승리를 계기로 독일법을 모델로 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 메이지 23년에 법원구성법과 거의 동시기에 형사소송법전(舊舊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법원구성법은 독일의 제도를 도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는 프랑스의 치죄법을 수정한 것으로, 독일 형사소송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그 후 다이쇼(大正)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독일 형사소송법의 도입(舊형사소송법)이 이루어졌다. 이를 당시의 독일 형사소송법전과 비교하면, 편성이 매우 비슷한 것(松尾浩也, 刑事訴訟法 下 [補正] 第2版 329쪽 참조)을 알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을 필두로 하는 유럽대륙국가의 형사재판절차는 직권주의를 기조로 한 것으로, 그 최대의 특징은 공판청구(기소)와 함께 검찰관 수중의 모든 증거(일건기록)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舊형사소송법 역시 직권주의를 그 기저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이른바 GHQ)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어 형사재판절차의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 형사재판의 기조로 한 것이 당사자주의였으며, 그 중심은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예단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있었다. 이른바 예단배제원칙의 도입이다.

그 중심축은

- ① 기소장일본(一本)주의(형사소송법 제256조 제6항)
- ②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구금 등에 관한 절차는 수소법원이 아닌 재판관이 행한다(형사소송법 제280조)
- ③ 제1회 공판기일 전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전 준비를 금지한다

고 하는 것으로, 일본의 형사재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그 발단은 여기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전에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제1회 공판기일이 끝날 때까지 재판관은 증거에 접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전준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형사소송규칙에서 사전준비절차를 금지했던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후술할 증거개시(Discovery)의 문제가 겹치고, 더욱이 새로이 도입된 증거법칙, 특히 전문법칙의 도입에 따라 증거, 특히 증거서류의 채용에 엄청난 시간을 요하게 되었다.

이 중 사전준비절차의 문제와 증거개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판전정리절차의 창설이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종전의 사전준비절차와 증거개시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통해 일본의 형사재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일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공판전정리절차의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 후, 조균석 교수가 한글로 번역한 본인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읽어 보신다면 보다 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일본의 사전준비

현행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과 형사소송법규칙(이하 형소규칙)이 제정되었을 당시, 예측배제원칙과 사전준비의 관계에 대해서 형소규칙 제188조는 "증거조사청구는 공판기일 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어서 동규칙 제194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판기일 전,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출두를 명하고, 또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증거조사의 범위, 순서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동규칙 제188조에 대해서 최고재판소의 견해는 "본조는 단서에 중점이 있는 규정으로, 심리촉진의 측면에서 보면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의 청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법(현행 형사소송법을 가리킨다...필자 주) 제256조 제6항, 제280조 제1항 등의 취지에서 보면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공판준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最高裁判所事務総局刑事局, 前掲書, 97쪽)고 하였고, 동규칙 제194조 제1항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증거조사의 범위·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형소규칙) 제188조 단서와 같이 이 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最高裁判所事務総局刑事局「刑事訴訟規則説明書」刑事裁判資料第14号 101쪽)고 하였다. 요컨대 형소규칙은 법원이 해야 하는 준비절차에 대해서 "공판심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할 수 없다(형소규칙 제194조 제2항)고 하여, 예단배제원칙에 대해 매우 충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진상의 해명을 의식하여 신중한 심리를 요구하는 형사변호인들로부터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지향하기 위해 집중심리를 理想으로 하는

입장에 대해 "줄속" 재판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배려를 하는 형사재판부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형사재판의 지연이 눈에 띄일 정도로 많아지게 된 것이다. 그 당시의 공판심리를 평하여 "치과치료식 심리방식"이라고 한 것은 유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5년대에 들어서, 도쿄지방법원을 비롯한 많은 법원에서, 검찰관과 변호인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사전준비나 계속심리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선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1956년 7월 6일 최고재판소장관 통달(通達) "제1심 강화방안의 실시에 대해"에 의하면, 예를 들어 기일 지정의 합리화와 계속심리의 진행이라는 항목 아래에 "복잡하고 곤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소송관계인과 협의를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개정(開廷) 횟수의 예측을 하고 가능한 한 연속된 기일을 지정하여 계속심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1957년 2월 1일에 도쿄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실시된 "제1심의 강화방안 요강의 구체적 실시방법"에 의하면, 계속심리의 실시를 위한 법원, 검찰관 및 변호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여, "집중심리의 실현에 노력하고, 특히 당일 결심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일 변론을 종결하도록 강구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1961년에 형소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져, 사전준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吉丸眞「事前準備及び準備手続」公判法大系Ⅰ 183쪽 참조. 또한 당시의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에서의 실정소개로서 原清「集中心理の体験記録」法曹時報13卷12号 83쪽 이하 참조.)

그 요점(法曹会編「刑事訴訟規則逐条説明第2編第3章公判」 참조)을 말하자면, 우선 소송관계인, 특히 당사자의 준비로서 증거의 수집 및 정리를 들고 있고(형소규칙 제178조의 2), 그리고 당사자의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준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형소규칙 제178조의 6 제1항, 제2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그 동안 법원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며 통상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일반적 규칙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기관 업무로서 서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형소규칙 제178조의 3, 동조의 8 및 동조 9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른바 "치과치료식 심리방식"에서 "외과수술식 심리방식"로의 전환을 시도한다(岸盛一 = 横川敏雄, 新版 事实審理 10쪽).

그런데 과거에는 노동·공안사건 등의 일부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심리의 모두에서부터 당사자 간(경우에 따라서는 법원도 포함)에 소송진행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되풀이되면서 다툼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사태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조정에만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장)이 개입하여 준비단계부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공판절차에서도 강력하고 단호한 자세로 소송지휘권을 발휘하지 않으면, 제1회 공판기일부터 충실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였다.

4. 증거개시의 문제

다음으로 증거개시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구형사소송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이행할 당시, 형사재판의 기조가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바뀌어 예단배제의 원칙하에 기소장일본주의(형소법 제256조 제6항)가 채용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제기(기소)와 함께 검찰관이 법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기소장(형소법 제256조 제1항), 기소장 등본(형소규칙 제165조. 또한 형소법 제271조 참조.) 및 구속영장·구류장(형소규칙 제167조. 또한 형소법 제280조 참조)뿐이었다. 따라서 변호인이 법원에 가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어 증거조사를 마칠 때까지 전혀 증거를 열람할 수 없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입법 당시에는 매우 형식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생각하여(松尾浩也, 刑事訴訟法下[新版] 補正版 238쪽. 또한 당사자주의의 분류에 대해서는 田宮裕, 刑事訴訟法[新版] 237쪽 이하 참조.), 증거는 검찰측이 수사를 하여 피고가 유죄인 증거들을 모으고 피고인·변호인 측에서도 독자적으로 증거를 모아 방어를 한다는 것이 중심이며, 이들 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하여 공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증거조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상대방에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99조 제1항)고 하는 규정을 두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는 것이 법조계에서의 공통의 이해에 이르러 법원, 검찰청 및 변호사회에 의한 3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증

거청구를 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이 검찰청에 가서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검찰관은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청을 방문한 변호인에게 증거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노동·공안사건이나 대규모 뇌물사건 및 선거위반사건, 특히 물증이 비교적 적은 공갈사건 등에서는 피고인이 종종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서면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형소법 제326조)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개시함으로써 오히려 죄증인멸의 우려가 발생하여 공개된 증거가 소송 외에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겼다. 형소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찰관은 조사의 청구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증거는 열람시켜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종종 증거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범인과 증거를 수사하고 소추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적어도 국가(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으로, 자금적으로도 실제적인 지원체제에 있어서도 그 기반이 있는 것에 비해, 범죄를 행하는 측은 경제적으로 빈궁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일으키는 것이고, 혹은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소추되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핸디를 지게 된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차이가 인정되는 피고인측에 적극적으로 유력한 반증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변호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력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변호인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정사(精査)하여 그 모순을 밝혀냄으로써 법관들에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지 않게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당사자주의 하에서 실제적인 것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변호방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해 서면증거를 증거로 청구할지 또는 서면증거 대신에 증인신문을 청구할지는 검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노동·공안사건, 뇌물사건, 선거사건, 조직폭력관련사건 등에서는 서면증거의 개시에 의해 그것을 이용한 관계인에 대한 압력(공작)이 문제가 되면서 처음부터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수종의 서면증거를 피고인·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주의를 기조로 하는 형사재판제도 하에서는 피고인·변호인 측으로부터의 증거개시청구에 검찰관이 어느 정도 응하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태도는 당초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다. 최고재판소 결정 1959년 12월 26일(刑集13卷13号 3372쪽)과 최고재판소 결정 1960년 2월 9일(裁判集刑事132号 181쪽、判例時報219号 34쪽)등에 따라 실무에서는 증거공개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결정 1969년 4월 25일(刑集23卷4号 248쪽)및 최고재판소 결정 1969년 4월 25일(刑集23卷4号 275쪽) 등에 의해 ① 모두절차 전의 증거의 전면개시 명령(후술과 같이 그 성질은 "결정"이다)은 위법이고, ② 검찰관에게는 조사 청구의 의사가 없는 증거에 대해 미리 앞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③ 법원은 증거조사의 단계에서 일정한 증거에 대해 법규의 명문 또는 소송의 기본구조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송지휘권에 의해 개별적으로 증거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田宮裕 『刑事訴訟法[新版]』 268쪽. 또한, 中川博之 『新実例刑事訴訟法[Ⅱ]』 325쪽 참조). 그러나 이것도 불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증거개시의 시기도 그 범위도 매우 불충분하였다.

5. 공판전정리절차의 창설

이에 재판원재판의 제도설계와 함께 재판원재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공판전정리절차였다.

2004년 개정 형소법은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내실화·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검토의 필요"가 있었고, "특히, 일부 형사사건의 소송절차에 국민참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관계로 관련한 모든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최종 의견서에 따른 지적을 받아 공판전정리절차가 도입되었다(2005년 11월 시행). 동절차는 충실한 공판심리를 지속적, 계획적, 또한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며, 사안·증거관계가 복잡하고 쟁점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재판원제도 대상사건에는 필요적으로 적용된다(재판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 그 목적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쟁점정리와 처리계획을

세워 신속하고 충실한 공판심리를 실현하고 적절한 집중심리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형소법 제281조의 1). 특히, 재판원제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재판원의 시간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과 함께 직접주의·구두주의에 입각한 방법 하에서, 쟁점 중심의 차별화된 심리를 연일적으로 개정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판심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① 검찰관청구증거의 공개(제316조의 14), ② 유형적 증거의 공개(제316조의 15), ③ 쟁점 관련 증거의 공개(제316조의 20)라는 3단계의 새로운 증거제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균석 교수가 번역한 본인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6. 공판전정리절차의 새로운 문제점

이상과 같이, 공판전정리절차는 순조롭게 출발을 하였으나, 작년 연말에 공표된 최고재판소의 그 후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공판전정리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확실히 공판심리기간은 단축되었지만, 공판전정리절차에 시간을 요하게 되어 기소부터 종결까지의 전체로서의 시간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길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最高裁判所事務総局「裁判員裁判実施状況の検証報告書」(2012年12月) 10쪽 이하). 이에 따르면 재판원재판의 공판전정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5월말)
자백사건	2.8월	4.6월	5.0월	5.0월
부인사건	3.1월	6.8월	8.3월	8.6월

(동검증보고서 57쪽 참조)

재판원재판에서는 공판전정리절차의 장기화에 따라 심리기간도 장기화하는 경향에 있고, 부인사건에서는 공판전정리절차 기간만으로도 재판관재판 시대의 평균 심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논의로서, 과거 형소규칙에서 규정한 준비절차는 제1심 재판을 강화하는 점에 있었고 형소규칙 및 형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번 공판전정리절차도 그 목적은 "제1심 공판절차의 충실 및 신속"이라는 것에 있었다.

가. 항소심의 역할

이와 함께 입법 단계에서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토되었지만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만을 기록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만으로 재판체를 구성하는 항소심이 재판원재판의 판결을 심사하고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소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항소심이 사후심임을 운용상에서도 철저히 하여 ① 항소심에서의 사실조사(형소법 제382조의 2)는 엄격하게 운용한다. ② 파기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를 피하고, 파기할 경우에는 원칙에 충실하여 최대한 파기환송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③ 그 결과, 항소심에서의 사실오인의 판단에 대해서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양형부당의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 재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재판원재판의 결론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되었다.

나. 최고재판소의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소심 판결이 몇 번 있었지만, 그 사건들은 최고재판소에 의해 상기의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82조의 사실오인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하고, 항소심이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最高裁判所2012年2月13日判決刑集66卷4号 482쪽 참조). 또한, 양형에 대해서도 제1심 사형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이 상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판단이 곧 최고재판소에서 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① 재판원재판의 헌법 적합성을 긍정하였고(最高裁判所大法廷平成23年11月16日刑集65卷8号 1285쪽), 또한 ② 재판원재판에서는 재판원재판의 사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最高裁判所平成24年1月13日判決刑集66卷1号 1쪽).

다. 재판원재판에 대한 개정 움직임

① 장기간 심리가 예정된 재판원재판 사건에서 재판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무대신은 법제심의회에 자문하였다. 심리에 연단위가 예정되는 사건을 상정하고 있다.

②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지금까지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재판원재판에서 이들 사건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자문사항으로 하지 않고, 다만 재판원을 선임할 때에, 피해자의 특정사항을 알게 된 재판원에게 이를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기소장 낭독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낭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형소법 제 291조 제2항), 판결서에는 피해자의 특정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법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운용상 기소장에 피해자의 이름 등의 특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검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되면 그 내용이 모두 드러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특정사항 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기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또한 원래 형사소송법적으로 사건의 특정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7. 마치며

시간 등의 사정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교과서의 "증거개시" 및 "공판전정리절차"를 읽어 주었으면 한다. 전문법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문 등이 있으면 그 때 언급하고자 한다.